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1. 세입	1
2. 세출	3
II. 재무제표	10
1. 재정상태표	10
2. 재정운영표	11
3. 순자산변동표	12
III. 성과보고서	13
1. 성과체계	13
2.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

제2장 검토의견

I.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주요 특징	15
1. 조직 및 정원	15
2. 결산 개요	16
II. 총괄	19
1. 회계처리 오류: 순자산 과대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계상 등	19
(1) 순자산 과대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계상	19
(2) 「국고금 관리법」 위반	20
2.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위반 집행 지양 필요	23
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필요	31
III. 일반회계	40
[세입]	40
1.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검토 필요	40
2. 기타경상이전수입: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47
[세출]	52
1.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연말에 집중된 홍보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52
2.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통합시스템 참여율 개선 노력 및 사업계획 수립 전 준비절차 철저히 할 필요	57

3. 청렴권익민간협력: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의 임의 폐지 및 이를 통한 신규 사업 수행 지양 필요	62
4. 종합상담창구운영: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이 법적 지위와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	68
5.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 신규 추진 부적정	73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8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8억 9,200만원이며, 10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4년 세입실적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892	1,005	684	-	321
○ 기타재산이자수입	-	2	2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2	2	-	-
○ 과태료	160	93	73	-	20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160	93	73	-	20
- 신고자 보호위반 과태료	-	10	-	-	10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10	-	-	10
○ 위약금	-	49	49	-	-
- 위약금	-	49	49	-	-
○ 가산금	-	2	-	-	2
- 가산금	-	2	-	-	2
○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820	521	-	299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558	717	466	-	251
-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94	25	9	-	16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10	0.2	0.2	-	-
- 과오납금 반환금 등	20	77	45	-	32
○ 기타잡수입	50	33	33	-	-
- 시설물 사용료 등	50	33	33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7	7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7	7	-	-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억 9,2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및 2024년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	결산(B)	
합 계	1,179	841	892	684	912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0.2	1	-	2	-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0.2	1	-	2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10	△62	160	73	180
563 과태료	110	△62	160	73	180
565 과징금	0.2	-	-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2	1	-	49	-
571 변상금	2	-	-	-	-
572 위약금	-	1	-	49	-
58 가산금	-	-	-	-	-
581 가산금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58	874	682	521	682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058	874	682	521	682
69 잡수입	8	25	50	33	50
691 기타잡수입	8	25	50	33	50
71 고정자산매각대	-	2	-	7	-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2	-	7	-

2. 세출

1) 세출총괄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27억 8,800만원이며, 그 중 95.8%인 1,079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 세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전용 등 (C)	예비비 (D)	예산 현액 (E=A+B +C+D)	집행액 (F)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을	
									예산 대비 (F/A)	예산 현액 대비 (F/E)
합 계	111,592	1,196	2,102 △2,102	-	112,788	107,996	3,236	1,555	96.8	95.8
○ 인건비 (대상)	48,817	-	1,001 △307	-	49,511	49,476	-	35	101.3	99.9
○ 기본경비	7,847	-	488 △582	-	7,753	7,197	-	556	91.7	92.8
기본경비 (대상)	3,160	-	206 △98	-	3,268	3,008	-	260	95.2	92.0
기본경비 (비대상)	4,687	-	282 △484	-	4,485	4,189	-	296	89.4	93.4
○ 사업경비	54,928	1,196	613 △1,213	-	55,524	51,324	3,236	964	91.4	92.4

-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의 45.8%인

494억 7,600만원을 인건비(1101)로, 6.7%인 71억 9,700만원을 기본 경비(1111)로 집행하였고, 47.5%인 513억 2,400만원을 사업경비로 집행하였음.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업경비의 결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6%인 17억 9,6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7.6%인 1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23.1%인 257억 9,1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1.9%인 237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1133)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0%인 11억 4,4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5.7%인 10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1134)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0.8%인 12억 2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3.6%인 112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민고충해소(1135)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2%인 13억 2,4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102.8%인 13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0.5%인 116억 9,4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5.6%에 해당하는 111억 7,700

만원을 지출하였음.

- 행정심판(1137)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11억 7,7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84.9%인 9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4년 단위사업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등	여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1,592	1,196	2,102 △2,102	-	112,788	107,996	3,236	1,555
○ 인건비(1101)	48,817	-	1,001 △307	-	49,511	49,476	-	35
- 인건비_대상(100)	48,817	-	1,001 △307	-	49,511	49,476	-	35
○ 기본경비(1111)	7,847	-	488 △582	-	7,753	7,197	-	556
- 기관운영기본경비_대상(200)	3,160	-	206 △98	-	3,268	3,008	-	260
- 기관운영기본경비_비대상(250)	4,687	-	282 △484	-	4,485	4,189	-	296
주요사업	54,928	1,196	613 △1,213	-	55,524	51,324	3,236	964
○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1,796	-	-	-	1,796	1,754	-	42
- 청렴권익정책알리기(300)	1,796	-	-	-	1,796	1,754	-	42
○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25,791	1,196	57 △16	-	27,028	23,710	3,236	82
- 행정정보시스템운영_정보화(320)	22,372	-	-	-	22,372	19,057	3,236	78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_정보화(321)	3,419	1,196	57 △16	-	4,656	4,653	-	3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1133)	1,144	-	41 △63	-	1,122	1,095	-	28
- 반부패기술지원_ODA(331)	298	-	-	-	298	286	-	12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등	여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청렴권익국제교류(332)	391	-	△22	-	369	357	-	13
- 청렴권익민간협력(333)	455	-	41 △41	-	455	452	-	3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1134)	12,002	-	7 △530	-	11,479	11,228	-	251
- 부패고충제도개선(340)	92	-	7	-	99	99	-	-
- 종합상담창구운영(341)	11,910	-	△530	-	11,380	11,129	-	251
○ 국민고충해소(1135)	1,324	-	50	-	1,374	1,361	-	13
- 고충민원조사활동(350)	1,324	-	50	-	1,374	1,361	-	13
○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11,694	-	438 △508	-	11,624	11,177	-	447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360)	3,066	-	7 △4	-	3,069	3,001	-	68
- 청렴교육및의식확산(361)	2,239	-	65 △108	-	2,196	2,111	-	8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363)	89	-	14	-	103	101	-	2
- 부패신고자보호보상(364)	2,989	-	-	-	2,989	2,807	-	182
- 공익신고제도운영(365)	1,741	-	△352	-	1,389	1,368	-	21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366)	991	-	345	-	1,336	1,323	-	13
- 청탁금지제도운영(367)	244	-	7 △14	-	238	196	-	42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368)	226	-	△13	-	213	193	-	20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369)	109	-	△17	-	92	77	-	15
○ 행정심판(1137)	1,177	-	20 △96	-	1,101	999	-	102
- 행정심판운영(370)	1,177	-	20 △96	-	1,101	999	-	102

2) 세출예산 이월내역

- 2024년 차년도 이월액은 행정정보시스템운영_정보화(1132-320) 사업 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32억 3,600만원임.

3) 세출예산 전용내역

- 2024년 전용액은 전년대비 33.7% 증가한 11억 2,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음.
- 인건비(대상)(1101-100) : 신규 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상용임금(110-03) 2,300만원, 청렴권익국제교류 상용임금(110-03) 2,200만원, 종합상담창구운영 상용임금(110-03) 5억 3,000만원, 청렴교육 및의식확산 상용임금(110-03) 4,300만원, 행정심판운영 상용임금(110-03) 7,600만원을 보수(110-01)로 전용함.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1111-200) : 위원회 청년인턴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210-01) 1억 8,500만원 및 2,100만원을 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으로 전용함.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및 국외이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210-05) 7,5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및제세(210-02) 2,900만원을 국내여비(220-01) 및 국외여비(220-02)로 전용함.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1132-321) :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전용함.
- 부패·고충제도개선(1134-340) : 하반기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국내여비(220-01) 7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함.
-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임차료(210-07) 3,000만원,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국내여비(220-01) 1,000만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국내여비(220-01) 1,0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함.
- 행정심판운영(1137-370) :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분 및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행정심판운영 일반수용비(210-01) 2,000만원을 행정심판운영 배상금(310-02) 및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함

< 2024년 세출예산 주요 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내 용	금 액
-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694
- 청년인턴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	206
- 출장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내외 여비 부족분 충당	168
-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41
-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분	13

4) 세출예산 불용내역

-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4%인 15억 5,500만원으로, 그 주된 부분은 인건비(1101) 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3,5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1111) 예산액의 7.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5억 5,600만원 및 기타 주요사업 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9억 6,400만원임.

< 2024년 세출예산 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불용 합계
합 계	-	-	-	1,555	1,555
○ 인건비(1101)	-	-	-	35	35
○ 기관운영기본경비(1111)	-	-	-	556	556
사 업 비	-	-	-	964	964
○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	-	-	42	42
○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	-	-	82	82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1133)	-	-	-	28	28
○ 부패 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1134)	-	-	-	251	251
○ 국민고충해소(1135)	-	-	-	13	13
○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	-	-	447	447
○ 행정심판(1137)	-	-	-	102	102

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당기 자산은 전기 대비 104억 7,500만원(32.7%) 증가한 425억 3,400만원임.
- 유동자산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 선급금 등으로 인하여 105억 2,900만원 증가, 투자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하여 1억 2,000만원 증가, 일반유형자산은 불용품 양여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1억 8,000만원 감소,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11억 1,500만원 감소,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 재계약 등으로 인하여 11억 2,000만원 증가함.

< 재 정 상 태 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42,534	32,059	10,475	32.7
Ⅰ. 유동자산	12,972	2,443	10,529	431.0
Ⅱ. 투자자산	170	50	120	240.0
Ⅲ. 일반유형자산	21,520	21,700	(180)	(0.8)
Ⅳ. 무형자산	6,748	7,863	(1,115)	(14.2)
Ⅴ. 기타비유동자산	1,123	3	1,120	37,333.3
부채합계(b)	71	422	(351)	(83.2)
Ⅰ. 유동부채	4	363	(359)	(98.9)
Ⅱ. 장기충당부채	67	59	(8)	(13.6)
순자산(a-b)	42,463	31,637	10,826	34.2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5억 1,100만원(2.5%) 증가한 1,040억 5,100만원임.
-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25억 3,700만원(2.5%) 증가한 1,040억 7,800만원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예산의 증액에 기인함.
-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7,300만원 증가한 1억 3,900만원으로, 당기에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및 소송충당부채전입액 등 총 1억 3,900만원이 비배분비용으로 집계됨.
-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9,900만원 증가한 1억 6,600만원으로, 당기에는 재화및용역제공수익 3,200만원, 자산처분이익 700만원, 기타수익 1억 2,700만원 등 총 1억 6,600만원이 비배분수익으로 집계됨.

< 재 정 운 영 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104,078	101,541	2,537	2.5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139	66	73	110.6
IV. 비배분수익	166	67	99	147.8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04,051	101,540	2,511	2.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04,051	101,540	2,511	2.5

3. 순자산변동표

- 당기 기말순자산은 전기 대비 108억 2,600만원(34.2%)이 증가한 424억 6,300만원임.
- 당기 순자산변동표상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5억 1,100만원 (2.5%) 증가한 1,040억 5,100만원임.
-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148억 9,200만원이 집계되어 전기 대비 17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원의 조달 항목은 국고수입 178억 1,000만원 증가, 체재금수익 3,100만원 감소, 기타비교환수익 1,500만원 감소, 무상이전 수입 700만원 감소 및 기타재원조달 1억 3,100만원 증가에 따라 총 179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 항목은 국고이전지출 1억 5,700만원 감소 및 무상이전지출 9억 5,7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전기대비 8억 증가함.

< 순 자 산 변 동 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I. 기초순자산	31,637	35,450	(3,813)	(10.8)
II. 재정운영결과	104,051	101,540	2,511	2.5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14,892	97,742	17,150	17.5
IV. 조정항목	(15)	(16)	1	6.3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2,463	31,637	10,826	34.2

Ⅲ.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국민권익위원회 임무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고, 비전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목표,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

구 분	전 략 목 표	프 로 그 램 목 표	성 과 지 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1	1	-	-
비율(%)	-	-	100	100	-	-

2.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는 1개 프로그램목표에 총 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달성(130% 이상)은 0개, 달성(100~130%) 1개, 미달성(100% 미만)은 0개임.

< 프로그램목표별 달성 현황 >

구 분	'23 달성	'24 달성	'24 결산액 (억원)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513
· 국가청렴도(CPI)(단위 : 점)	X	O	513
· 권익행정 만족도(단위 : 점)	O	-	-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세부 현황 >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2년	'23년	'24년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 권익증진	① 국가청렴도 (CPI) (점)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발표 하는 국가별 국가 청렴도(CPI)	목표	64.0	64.0	64.0
				실적	63.0	63.0	64.0
				달성률	98.4%	98.4%	100.0%

제2장 검토의견

Ⅰ.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주요 특징

1. 조직 및 정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3인,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와 2개의 소속기관(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은 561명(본부 484명, 소속기관 77명)이며, 현원은 574.75명(본부 488.625명, 소속기관 86.125명)임.

< 국민권익위원회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24.12.3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사	전문경력관	특정직
합계	정원	561	4	1	542	1	10	3
	현원	574.75	4	1	555.75	1	10	3
본부	정원	484	4	1	466	1	9	3
	현원	488.625	4	1	470.625	1	9	3
소속기관	정원	77	-	-	76	-	1	-
	현원	86.125	0	0	85.125	0	1	0

2. 결산 개요

1) 총수입 · 총지출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800만원(23.3%)이 적은 6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18.7%)이 감소함.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추경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추경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23	823	841	18	892	892	684	△ 208	△ 157
총수입	823	823	841	18	892	892	684	△ 208	△ 157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5억 9,600만원(3.2%)이 적은 1,079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1,000만원(19.7%)이 증가함.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추경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추경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4,958	94,958	90,186	△ 4,772	111,592	111,592	107,996	△ 3,596	17,810
총지출	94,958	94,958	90,186	△ 4,772	111,592	111,592	107,996	△ 3,596	17,810

2)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억 9,200만원이며, 10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억 8,4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2,100만원 미수납되었음.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92	892	-	892	1,005	684	-	321
합 계	892	892	-	892	1,005	684	-	321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27억 8,800만원이며, 이 중 1,07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3,6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으며, 15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함.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11,592	111,592	1,196	±1,122	-	112,788	107,996	3,236	1,555
합 계	111,592	111,592	1,196	±1,122	-	112,788	107,996	3,236	1,555

3) 재무결산

-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자산은 전기 대비 104억 7,500만원이 증가한 425억 3,400만원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사업 선급금으로 인한 유동자산 105억 2,9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기 대비 3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3억 5,900만원 감소에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기 대비 108억 2,600만원 증가한 424억 6,3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040억 7,800만원으로 전기 대비 25억 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40억 5,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25억 1,100만원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2,534	32,059	10,475	32.7
	유동자산	12,972	2,443	10,529	431.0
	투자자산	170	50	120	240.0
	일반유형자산	21,520	21,700	(180)	(0.8)
	무형자산	6,748	7,863	(1,115)	(14.2)
	기타 비유동자산	1,123	3	1,120	37,333.3
	부 채	71	422	(351)	(83.2)
	유동부채	4	363	(359)	(98.9)
	장기충당부채	67	59	(8)	(13.6)
	순자산	42,463	31,637	10,826	34.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4,078	101,541	2,537	2.5
	재정운영순원가	104,051	101,540	2,511	2.5
	재정운영결과	104,051	101,540	2,511	2.5

II. 총괄

1. 회계처리 오류: 순자산 과대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계상 등

1) 순자산 과대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계상¹⁾

□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산한 2024회계연도 자산은 425억원, 부채는 1억원, 순자산은 424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1,040억여원이었음.

그러나, 감사원이 재무제표 결산을 검사한 결과 부채가 1,885만원 과소 계상되어 순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었고, 재정운영결과가 1,885만원 과소 계상되어 있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정무직공무원 관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해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차액을 별도의 계좌에 예금으로 관리하고서도 이를 미수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 이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유동자산)이 2억 2,0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수채권(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되었음.
-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지침」 문단 5(현금및현금성자산)와 문단 6(미수채권)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1) 이하는 감사원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하고,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²⁾

-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 3건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향후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이를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885만원, 소송충당부채 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음.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 7(최선의 추정치) 및 문단 13(충당부채의 변동)에 따르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2) 「국고금 관리법」 위반

□ 2024회계연도에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의 임차료(210-07목)에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5월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다고 밝힘.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2건(각각 808만원, 533.5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636.8만원) 등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임.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한 현황 >**

(단위: 원)

지급일자	세부사업명	지급내용	지급액
2024.5.10.	반부패기술지원 (ODA)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제12차 영어 과정) 강의실 임차료(210-07목) (SEOULGARDENHOTEL-112)	8,080,000
2024.9.25.	반부패기술지원 (ODA)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스페인어 과정) 강의실 임차료(210-07목) (SEOULGARDENHOTEL-112)	5,335,000
2024.12.10.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시스템 냉난방기 콤프레샤 교체(210-09목)	6,368,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관서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기존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³⁾ 이에 동법 시행령

3)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등에서는 출납공무원이 관서 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⁴⁾

< 「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예산과목	범위
운영비 (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 경비에 한하여 기존 지급 절차의 예외를 설정한 관서운영경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위반 집행 지양 필요

1) 총액인건비제 개요

-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하여 2007년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직 정원관리 측면에서 인력 규모의 결정과 기구 설치의 자율성 확대임.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총정원의 3% 내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둘째, 보수 관리 측면에서 인사 관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인건비의 배분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보수월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활급 성격의 인건비 또는 통일적 기준이 요구되는 필수 항목만을 ‘기본항목’으로

두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각 기관에서 지급 대상이나
요건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예산관리 측면에서 종전에 경직적 성격이 강했던 인건비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인력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액인건비 시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간 ‘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이용요구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음. 또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인건비 여유 재원의 사용에 대해 각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음.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

구 분		세부내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 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목)

자료: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3

2)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예산 운영 개요⁵⁾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함.
-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함.
-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은 집행지침 상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봄.
- ①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함.

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5

- ② 각 경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함.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

3)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집행을 위해 ‘인건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인건비(대상)’사업은 2024년 이·전용 중 6억 9,4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495억 1,100만원 중 494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 [예산액 대비 101.3%])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사업은 2024년 이·전용 중 1억 8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32억 6,800만원 중 30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0% [예산액 대비 95.2%])되고, 2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사업은 2024년 이·전용 감 2억 2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44억 8,500만원 중 41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 [예산액 대비 89.4%])되고, 2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대상)	48,817	48,817	-	694	49,511	49,476	-	35	52,132
보수(110-01)	48,025	48,025	-	620	48,644	48,616	-	29	51,339
기타직 보수 (110-02)	410	410	-	191	601	599	-	2	394
연가보상비 (110-05)	382	382	-	△116	265	262	-	4	399
기관운영기본경비 (대상)	3,160	3,160	-	108	3,268	3,008	-	260	3,595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687	4,687	-	△202	4,485	4,189	-	296	4,5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대상) 사업 및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각각 6억 9,400만원과 1억 800만원을 이·전용 증액 하였습니다.

○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부족, 신규공무원 초과운용 등으로 인한 부족분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및 청렴권익국제교류, 종합상담창구 운영, 청렴교육및의식확산,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 자체전용 하였습니다.

< 인건비(대상)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44.25.)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105	인건비(대상) (1101-100)	110-02	수습직원(7급)의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른 기타직보수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411.11.)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47	인건비(대상) (1101-100)	110-02	
조정 (2412.11.)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38	인건비(대상) (1101-100)	110-02	지역인재 9급 직원의 수습 근무에 따른 기타직보수 부족분 충당
	인건비(대상) (1101-100)	110-05	116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기타직보수 증가에 따른 보수재원 조정으로 보수목 부족분 충당
자체 전용 (2412.18.)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110-03	23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신규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한 보수 부족분 충당
	청렴권익국제교류 (1133-332)		22			
	종합상담창구운영 (1134-341)		53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136-361)		43			
	행정심판운영 (1137-370)		7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은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청년인턴)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등 부족분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등에서 전용
하였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6.7.)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1111-250)	210-01	185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110-04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전용 (‘24.6.7.)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1111-250)	210-01	21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320-09	
전용 (‘24.10.22.)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210-05	75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1111-250)	220-01	지방의회 실태조사 팀 운영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전용 (‘24.12.16.)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110-03	23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신규공무원 편성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인건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중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은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대상 사업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적용대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할당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의 규모, 종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사업비의 일용임금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 인건비(대상)”를,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의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을 각각 충당하였는바, 이는 총액인건비 제도 위반임.

○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 집행지침 및 절차를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임.

○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와 중장기 채용 조달 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정원·보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필요

1)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⁶⁾된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 집행 및 제도 운영을 담당함.

□ 이와 같이 소관 업무가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수범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령의 해석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해설집, 판례집, 사례집, 업무편람·매뉴얼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권익위가 제작하는 사례집, 업무편람 등 안내서는 규율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며, 각종 교육 및 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교재로 활용되고 있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2024년 권익위 제도 안내책자 발간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안내서 명	집행액	계약업체	세부사업명
1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집	2	휘문인쇄	기관운영기본경비
2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집	8	가온기획	기관운영기본경비
3	권익백서	9	(사)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기관운영기본경비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영문브로셔 제작	0.51	휘문기획	기관운영기본경비
5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 호·보상 업무 안내서(국회의원)	9	(사)하나복지회 인쇄 사업장	청렴권익정책알리 기
6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 내서(24.12.)	3	휘문인쇄	청렴권익민간협력
7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	3	가온기획	부패고충제도개선
8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9.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부패고충제도개선
9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 례집	10	가온기획	고충민원조사활동
10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 도 평가 안내서	3	가온기획	청렴도측정 및 부 패영향평가
11	2025 부패영향평가 지침	16	사단법인하나복지회 인쇄사업장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2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6	(사)한국장애인유권 자연맹	공직자행동강령운 영
13	2024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29	(사)남북장애인 교류협회 인쇄사업부	공공재정 환수제도운영
14	청탁금지법 주요 형사판례집	36	(주)휘문인쇄	청탁금지제도운영
15	2024년도 청탁금지제도 권역 별 설명회	8	성심기획	청탁금지제도운영
16	20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1	성심기획	청탁금지제도운영
1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 무 편람(2024)	49	(사)하나복지회 인쇄 사업장	이해충돌방지제도운 영
18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 석 사례집	46	한결엠	이해충돌방지제도운 영
19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자료집	10	가온기획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운영
20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5	성심기획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운영
21	2023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10	(사)한국장애인유권 자연맹인쇄사업부	행정심판운영
22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매뉴얼	3	(주)성심기획	행정심판운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가 발간하는 인쇄자료 및 책자 등은 예산상 제약으로 기관별 배포 부수가 한정적이어서 각급 기관에서 추가 배포를 요청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함.

□ 그런데, 이와 같이 배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출판한 사례집, 해설집, 업무편람 등 책자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가 펴낸 안내서가 시중 출판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는 총 43종에 이르며, 판매가격은 최저 9,000원에서 최고 45,54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권익위 안내서 시중 판매 현황⁷⁾ >

연번	책자명	출판사명	판매가격(원)
1	국민권익백서(2022)	진한엠앤비	40,500
2	2021 국민권익 백서	진한엠앤비	45,540
3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진한엠앤비	10,800
4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진한엠앤비	21,600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진한엠앤비	36,000
6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4)	진한엠앤비	21,600
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3)	진한엠앤비	18,000
8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진한엠앤비	20,700
9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진한엠앤비	9,000
10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진한엠앤비	20,700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김영란법)	진한엠앤비	20,700

7) 실제로 권익위 안내서를 판매 중인 출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으나, 지면 관계상 책자별로 일부 출판사만 예시로 기재하였음.

연번	책자명	출판사명	판매가격(원)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 (2017)	진한엠앤비	18,000
13	알선 청탁 근절방안	진한엠앤비	9,000
14	공직사회의 부당한 청탁방지를 위한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진한엠앤비	9,900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김영란법)	진한엠앤비	20,700
16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진한엠앤비	16,200
17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6,200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 법인 대상)(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9,800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9,800
20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3,500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9,800
2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6)	진한엠앤비	13,500
23	부패영향 평가지침(2016)	진한엠앤비	21,600
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진한엠앤비	18,000
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025	산책길	34,200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4	산책길	21,600
2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024	산책길	36,000
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3	산책길	10,800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산책길	23,400
30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산책길	20,700
31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산책길	20,700
32	영국뇌물법(2010)	휴먼컬처아리랑	15,000
3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진한엠앤비	16,200
34	부패 공익침해 방지 심의 의결례집(제14집)	진한엠앤비	40,500
35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기업고충민원팀 적극행정 3년의 성과)	진한엠앤비	12,600
36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진한엠앤비	9,000
37	공공부문 특별(악성,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	진한엠앤비	10,800
38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는 국민권익 패스트트랙)	진한엠앤비	16,200

연번	책자명	출판사명	판매가격(원)
39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역사 속에 찾은 청림 이야기)	진한엠앤비	11,700
40	고등학교 학생용 청림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14,400
41	중학교 학생용 청림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14,400
42	초등학교 고학년용(4~6학년) 청림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14,400
43	초등학교 저학년용(1~3학년) 청림교육 매뉴얼 개발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27,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업무편람 등 책자를 판매하는 출판사가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규정⁸⁾ 등에 따라 구매수요를 고려하여 자체 결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판 및 판매는 권익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함.

□ 그런데,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식은 기준⁹⁾을 분류하여

- 8)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9)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

저작권자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은 이 기준 즉 “공공누리¹⁰⁾”를 적용하도록 의무화¹¹⁾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조건의 종류(이용 허락의 범위)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공공누리의 유형 >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0)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1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 - 0449호

□ 권익위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¹²⁾하여 공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제공하는 안내서 전자파일에 대해서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누리 제2유형(자유로운 이용은 가능하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제4유형(자유로운 이용은 가능하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형금지)을 적용하고 있음.

1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등)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권익위 전자파일 배포 형태 예시 >

첨부파일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2.66M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다음글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목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이와 같이 권익위는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스스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자료들이 시중에서 상업용으로 매우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임.

○ 권익위가 상업적으로 이용 금지한 자료를 일부 업체가 출판·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가 표시한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만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가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해당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여 공공누리 유형을 제3유형에서 제4유형으로 변경한 것이며, 업체가 출판할 당시에는 상

업적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또한, 공공저작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공공 목적의 안내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및 주의를 다하겠다는 입장임.

- 권익위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III. 일반회계

[세입]

1. 과태료¹³⁾: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 및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4년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00만원이며, 이 중 7,3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¹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¹⁵⁾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¹⁶⁾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이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3) 세부사업: 과태료(56-563)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부과할 수 있음.

< 2024년도 과태료 항목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56-563)	160	160	-	160	93	73	20	-	180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50	53	43	10	-	6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	60	30	30	-	-	60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50	-	-	-	-	60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과태료	-	-	-	-	10	-	10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2024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예산 5,000만원 중 4,300만원,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예산 6,000만원 중 3,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은 수납이 없음.

□ 한편, 2023년 미수납액 1억 8,000만원(6건)의 2024년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1억 2,000만원(4건)은 2024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처분

취소(사유: 최근 판례 고려 시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결정을 하였
 였고, 6,000만원(2건)은 2024년 1월과 12월 각각 수납하였음.

- 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4건에 대해서는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어, 과태료 총 1,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도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부과 연도	부과 일자	부과대상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비고
2020	'20.09.07.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 구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30	-	30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2.9.1. 선고) 취지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제2분과46호) 2024.3.4.
2021	'21.10.12.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 구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30	-	30	
2024	'24.03.04.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 구 결정 미이행	8	8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 하는 대신 과태료 부 과 결정(2024.3.4.)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 2024.3.22. 수납
2020	'20.12.28.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30	-	30	대전고등법원 판결 (2024.1.11. 선고) 취지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제2분과47호) 2024.3.4.
2022	'22.02.28.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30	-	30	

부과연도	부과일자	부과대상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024	'24.03.04.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5	5	-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결정(2024.5.13.) - 2024.6.17. 수납
2022	'22.11.29.	사립학교 회계비리 등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30	30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4.10.10. 대법원 위원회 승소 2024.12.16. 수납
2023	'23.12.18.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2차) 미이행	30	30	-	2024.1.31. 수납
2024	'24.07.02.	OO마을교회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10	-	10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① 이행강제금 수납 5건(대법원 승소 1건), 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16건(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3건 포함)으로, 징수결정 21건 중 76.1%가 취소되었음.

< 2022년~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2	2020-12-08	-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3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4	2021-02-09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5	2021-07-20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6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7	2022-02-28	20백만원	20백만원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8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9	2022-11-29	20백만원	20백만원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10	2022-11-29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1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2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3	2023-12-22 (반환일자)	-	△22백만원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2023.10.12.선고)
14	2024-03-04	10백만원	8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1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2024.3.22.
15	2024-03-04	5백만원	5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2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3.4

구분	부과일자	장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결정 2024.5.13. - 2024.6.17. 수납
16	2024-07-02	10백만원	-	1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17	2022-04-11	20백만원	20백만원	-	▪2022.7.26. 수납
18	2022-05-20	20백만원	20백만원	-	▪2022.6.30. 수납
19	2022-07-25	30백만원	30백만원	-	▪2022.8.31. 수납
20	2023-12-18	30백만원	-	30백만원	▪2024.1.31. 수납
21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024.10.10. 대법원 위원회 승소 ▪2024.12.16. 수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9건 중 패소가 8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아래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최근(2024.3.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소송 2건의 요지 >

<사례 1: OO고등학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2.9.1. 선고) 요지>

원고들이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신법 제62조의6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례 2: OO센터 신분보장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결 (2024.1.11.) 요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신법 제62조의3에서 정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아닌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구법 제9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신법 제6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 대법원 판결(2024.3.4.)이 위에 인용된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려졌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행강제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규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부과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권익위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¹⁷⁾: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 과오납금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4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2,000만원이며, 이 중 5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9,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682	-	682	820	521	299	-	68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권익위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한 공공기관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¹⁸⁾, 「공

17)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익신고자 보호법」 19) 등에 따라 보상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런데,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2억 9,900만원)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억 5,1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89.3%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

연도	내용	금액(원)	건수(건)	비고
2022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33,946,500	9	납기 미도래 7건 (31,129,000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11,834,160	50	납기 미도래 21건 (34,893,250원)
	과오지급금 등 반납액	4,829,610	2	납기 미도래 1건 (4,416,610원)
2023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68,418,440	36	납기 미도래 11건 (16,270,260원)
	과오지급금 등 반납액	11,966,820	28	-
2024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171,720	3	납기 미도래 3건 (16,171,720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51,242,290	44	납기 미도래 35건 (238,605,520원)
	과오지급금 등 반환액	31,858,820	29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납기 미도래(부패신고 2억 3,860만원, 공익신고 1,617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신고보상금 상환액의 납기는 각 법률에 3개월로 정해져 있음을 감안하면, 2024년도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납기 미도래였다고 할지라도 3월 이내에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5년 7월 기준으로 미수납 금액이 여전히 5,147만원(11건)에 달함.

<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현황 >

기관명	금액(원)	발생일자	현재('25.7.10. 기준) 수납 여부
서울노원구청	228,000	2024-06-18	미수납
경기도 고양시	3,581,690	2024-10-07	미수납
해운대구	17,486,000	2024-10-07	미수납
경기도	5,250	2024-10-18	미수납
대구광역시	9,499,06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7,111,50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13,356,44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52,88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52,88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6,00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93,000	2024-10-23	미수납
합계	51,472,7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이와 같은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납부 독촉을 위한 공문 발송 횟수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문 출장은 11월 또는 12월에 연간 5~7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그쳤음.

○ 권익위가 신고자 보·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50억원²⁰⁾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공문 발송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문 발송 횟수	192회	104회	90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 2025년 예산 기준 54억 2,500만원

<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 현황 >

연도	순번	대상기관	출장일
2022년 (5개 기관)	1	전라북도	2022-11-24
	2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2-12-01
	3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09
	4	서울특별시	2022-12-16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12-20
2023년 (6개 기관)	1	충청남도	2023-11-29
	2	충청남도 서천군	2023-11-29
	3	대구광역시	2023-12-08
	4	경기도 여주시	2023-12-13
	5	서울특별시	2023-12-15
	6	서울특별시 중구	2023-12-15
2024년 (7개 기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11-13
	2	전남특별자치도	2024-11-14
	3	전북특별자치도	2024-11-15
	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11-15
	5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4-11-19
	6	대구광역시	2024-11-19
	7	경기도 평택시	2024-11-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을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청렴권익정책알리기²¹⁾: 연말에 집중된 홍보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권익정책알리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정책홍보효과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7억 5,400만원(97.7%)이 집행되고,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96	1,796	-	-	1,796	1,754	-	42	1,390
권익증진 정책홍보	619	619	-	-	619	716	-	△97	384
디지털소통팀 운영	952	952	-	-	952	833	-	119	75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1) 세부사업: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2) 검토의견

- ‘청렴권익정책알리기’는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임.
- 세부적으로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매체 등을 기준으로, TV·라디오 옥외광고 등을 홍보수단으로 하는 ‘권익증진 정책홍보’ 내역 사업과 포털 사이트, 메신저 배너 등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소통팀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역사업 내에서 각 제도 홍보 사업 등으로 내내역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권익증진 정책홍보’ 사업에서 5억 7,300만원을, ‘디지털소통팀 운영’ 사업에서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음영: 주요 제도 홍보비, 단위: 백만원)

구분	권익증진 정책홍보		디지털소통팀 운영	
	편성금액	집행금액	편성금액	집행금액
부패방지 제도 홍보	120	250	204	194
고충민원 제도 홍보	80	123	136	91
행정심판 제도 홍보	20	24	34	26
권익개선 제도 홍보	80	20	136	128
기타 제도 홍보	-	-	68	40
디지털소통 콘텐츠 홍보	-	-	318	308
기타 (홍보물 제작, 구독료 등)	162	156	43	34
계	462	573	939	821

* 홍보비 관련 내역사업 중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2024년도 홍보비 예산의 기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70.7%를 4분기에 집행하였고,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51.7%를 12월에 집행하여, 연말에 홍보 사업이 집중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비’ 예산 월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기간		집행액		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	
1분기	1월	3,676	20,078	0.3	1.4
	2월	6,511		0.5	
	3월	9,891		0.7	
2분기	4월	35,349	135,674	2.5	9.7
	5월	25,533		1.8	
	6월	74,792		5.4	
3분기	7월	93,662	253,251	6.7	18.2
	8월	132,736		9.5	
	9월	26,853		1.9	
4분기	10월	126,748	984,540	9.1	70.7
	11월	137,499		9.9	
	12월	720,294		51.7	
계		1,393,543	1,393,543	100	1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특정 사업의 예산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음. 특히, 기관의 홍보사업은 사전에 정해진 사업계획에 맞추어 집행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 홍보가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면 한정된 기간에만 노출되게 되므로 그보다는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보다 높

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사업의 예산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반부패주간(12.6.~12.12.)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반부패 관련 홍보비를 연말에 집행하였고, 2~3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위원회 주요정책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비 등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12월 집행된 홍보사업 중에는 반부패 주간 운영과 무관하여 반드시 12월에 실시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도 다수 있어, 이를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2월 집행된 내역 중 반부패 관련성이 낮은 집행 내역(일부 예시) >

(단위: 천원)

일시	집행내용	금액	비고
2024.12.5.	국민생각함 옥외광고	15,000	국민생각함: 국민정책 참여플랫폼
2024.12.6.	청렴연수원 홍보 영상 신규 제작	20,000	기관 홍보영상
2024.12.16.	행정심판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50,000	행정심판 제도 홍보
2024.,12.16.	국민콜110 버스 외부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30,208	국민콜110: 정부민원안 내콜센터
2024.12.24.	국민생각함 온라인 배너 홍보	81,400	
2024.12.26.	110 콜센터 온라인 배너 홍보	17,600	
2024.12.27.	국민콜110 지하철, 유튜브, 버스 외부광고	6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특정 주간에 관련 제도 홍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정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균형 있게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특정 주간에 관련 제도 홍보를 우선 배치하고, 그 외의 제도 등의 홍보는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기간에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계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홍보예산이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²²⁾: 통합시스템 참여율 개선 노력 및 사업계획 수립 전 준비절차 철저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4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51억 9,900만원(85.2%)이 집행되고, 3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2,372	22,372	-	-	22,372	19,057	3,236	79	7,665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운영	18,491	18,491	-	-	18,491	15,199	3,236	56	2,96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2)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2) 검토의견

-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일반·특별 행정심판 등 행정심판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등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통합시스템 기반 구축-고도화-자동화 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203억 8,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

기간	내용
’23. 3. ~ ’23. 8.	BPR/ISP/ISMP 용역 추진
’23. 9. ~ ’24. 3.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24. 6. ~ ’25. 6.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기반 구축)
’25(예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기능 고도화)
’26(예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편성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26년 (3단계)
예산액	20,389	16,885	1,988	1,51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비교하여 그 이행이 저조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업 계획상 통합시스템 참여 대상 기관의 실제 통합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임.

□ 동 사업은 다양한 경로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인데, 사업 계획 수립(2023년)부터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25년 6월)된 현재까지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에 큰 변화가 없음.

이는 통합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의 이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변화 >

(단위: 개)

구분	2023년도 (12월 기준)	2024년도 (10월 기준)	2025년도 (5월 기준)	2025년도 (6월 기준)
참여 기관 수	94	93	95	90
미참여 기관 수	24	25	23	2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당시 통합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기관 중 현재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각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이 기관

성격상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가정보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국가안보·군사보안 때문에 애초부터 시스템 통합에 부적절한 기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과의 시스템 참여 협의도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통합시스템 미참여 기관 현황 >

구분(기관 수)	기관명
일반(8)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세(3)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상보험(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청(11)	중앙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소청심사위원회,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토지등(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위와 같은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시스템 참여율 저조가 지속된다면, 일반 행정심판기관뿐만 아니라 조세·보상보험·소청·토지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까지 일원화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등 사업의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 복잡한 권리구제 경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인 처분에 따라 각 소관 심판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창구 통합이 중요한데, 통합 대상 특별행정심판기관 61개의 기관 중 41개 기관만이 참여하였음.

<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현황 >

(단위: 개, %)

구분	총 기관	통합 대상 기관(A)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현황		
			참여 (B)	미참여	참여율 (B/A)
일반행정심판기관	57	57	49	8	86
특별행정심판기관	66	61	41	20	67.2
계	123	118	90	28	76.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시스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청렴권익민간협력²³⁾: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의 임의 폐지 및 이를 통한 신규 사업 수행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권익민간협력’은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5,500만원 중 4억 5,300만원(99.5%)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권익민간협력	455	455	-	-	455	453	-	2	318
시 민 협 력	190	190	-	-	190	194	-	△4	185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87	87	-	-	87	86	-	1	41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178	178	-	-	178	173	-	5	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3) 세부사업: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2)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청렴정책 모니터링’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4,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전액 세목조정하였고, 추가로 일반수용비(210-01) 5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하였음.

< 2024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9.)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14	40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01	기존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 예산 세목이 변경되어 일반용역비(210-14) 40백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4.12.23.)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01	0.5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07	2030자문단이 신규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면회의 증가로 인한 임차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반수용비(210-01) 0.5백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아래와 같이 대상·인원·프로그램 내용·사업 성과 등에서 매우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청렴정책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전연령’의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20대와 30대로 국한하고 있음.

○ 둘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인원이 200~250명인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20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에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19명을 선발함

○ 셋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청렴을 주제로 반부패 정책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요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넷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및 전문가와 함께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청년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고충처리 회의 및 위원회 정책 홍보 등에 참여함.

<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의 비교 >

구분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2022~2023)	2030자문단 운영(2024)
대상 인원	청렴정책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일반국민 및 전문가 200~250명	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20대·30대 19명
예산	연 4,000만원	연 5,700만원
프로그램 내용	(사전의제 취합) 대국민 설문조사 를 실시하는 한편, 모니터단의 의 견을 온라인 취합하고, 이를 토대 로 모니터링 사전의제를 선정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 (연계 활용) 소관부서 협업 및 제 도개선 과제 연계 등을 통하여 모 니터단의 제안 활용	(청년참여 확대) 오프라인 정책참 여 기회 제공 및 오프라인 토의 진행 (청년 의견수렴) 청년의 정책 제 안·자문 등을 받아 청년의 의견을 위원회 업무에 반영 (정책 홍보) 위원회 영상 콘텐츠 제작 참여 등을 통해 위원회 정책 홍보
사업 성과	(국민생각함 정책제안 활동) 2년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115건 제안 (1·2차 온라인 토론회) 매년 2회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주제에 대 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충처리 현장회의 6회 제도개선 간담회 3회 청년 제도개선 제안 40건 위원회 영상 콘텐츠 제작 참여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부터 2030자문단이 소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예
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모니터링 측면에서만 유사할 뿐, 대상·인원·프로그램 내용·사업 성과 등이 모두 상이함. 특히 국회가 심의 및 확정된 본 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임의로 폐지하고,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로 임의로 세목조정한 것은 부적절함.

○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임의로 폐지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4) 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사업 예산 50% 삭감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확대가 필요함에도, 2023년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5,000만원을 격오지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차량 지원 등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조정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 예산의 50%를 삭감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예산 이·전용 미실시 ※ 설치기관 : '22년 70개 → '23년 80개 → '24년 11월 94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업을 임의로 대체하여 세목조정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종합상담창구운영²⁴⁾: 민원상담위원회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이 법적 지위와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은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 상담,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1,400만원으로 이 중 1억 6,200만원(75.7%)이 집행되고,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종합상담창구 운영	11,910	11,910	-	△530	11,380	11,129	-	251	9,526
종합민원 상담센터운영	214	214	-	-	214	162	-	52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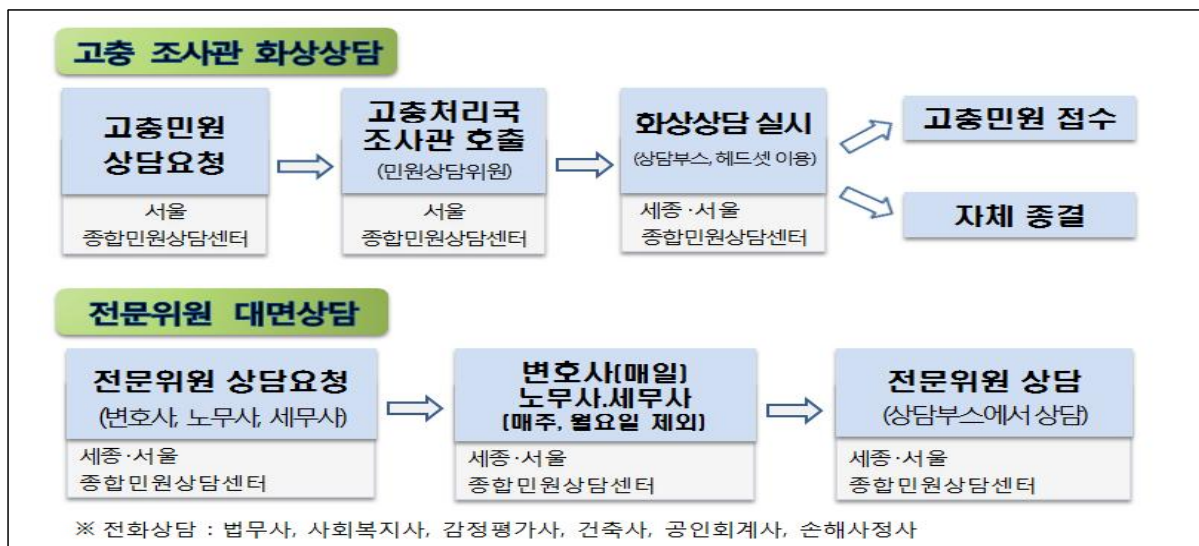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4) 세부사업: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의 내내역사업인 ‘민원상담위원 · 전문상담위원 수당’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상담센터 내에서 화상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민원상담위원 및 전문상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민원상담위원 · 전문상담위원 수당’ 사업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 중 ‘민원상담위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²⁵⁾ 및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²⁶⁾에 따라 국민권익

- 2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6)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2조(위촉) ② 위원장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다.
- ③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실무담당 공무원 등 2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에서 민원 안내·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면접채점표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²⁷⁾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원상담위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에 민원상담위원·전문상담위원 수당으로 1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민원상담위원 수당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5,760만원(6명×80만원×12개월)을 집행하였음.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의 고용부담금(320-09)으로 600만원(50만원×12개월)을 집행하였는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담금(320-09)은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²⁸⁾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촉직인 민원상담위원에게 고용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민원상담위원은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보험 가입 신고가 누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7)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3조(임기) ①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위원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76

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해 2012년부터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으로 해당 보험금을 납입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해당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공문의 취지는 단순히 민원상담위원을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상담위원의 채용 및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을 안내한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음.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공문 내용(일부 발췌) >

3. 근로자 인정

- 명예직으로 위촉되어, 1일 5만원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은 실비보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미신고 등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일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있으나
- 실질적인 요건에 있어
 - 격일제로 근무하여 매월 10일 이상 근무하면서, 1일 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해당 금액은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져 있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며,²⁹⁾ 결근, 지각 등 운용규정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해촉 등 불이익이 있고,
 - 방문 또는 전화 민원 상담이라는 고유의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상담 매뉴얼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면서, 중요 업무에 대하여 상담안내 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필요시 상담기법 및 친절 교육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

29) 출근 시 근무상황부에 출석 날인 등

□ 즉,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³⁰⁾과 유사한 기준으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것이라면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으로 유지하면서 수당 지급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병행할 것이 아니라,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

○ 그러한 방식이 인건비 비목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 국가기관이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고용부담금 비목에 부합하는 집행방식일 것임.

□ 반면, 만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상담위원의 업무 범위나 내용에 비추어 민원상담위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였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5. 청렴교육및의식확산³¹⁾: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 신규 추진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9,600만원 중 21억 1,100만원 (96.1%)이 집행되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9	2,239	—	△43	2,196	2,111	—	85	2,41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 국민, 미래세대 등 대상의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3억 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7,900만원임.

31)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예산액 5,000만원의 2배 이상인 1억 300만원 집행됨.

< 2024년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4년 집행액 (B)	집행 잔액	비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379	5	
· 교육보조원 운영	39	15	24	
· 교육과정 운영	72	41	31	
· 교육콘텐츠 개발	120	120	-	
·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 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	103	100	3	·85개교 대상 실시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 로그램 개발 운영	50	103	△53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59) ·초등학생 청렴캠프(44) - 연도 중 신설 추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같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적의 일반
용역비가 초과 집행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24년 초등
학생 청렴캠프” 용역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4,400만원을 집행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4년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용역계약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2024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59	2024.2.26.~2024.12.20.	제한경쟁
	2024년 초등학생 청렴캠프	44	2024.4.22.~2024.12.17.	제한경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목)로부터 일반용역비(210-14목)로 6,500만원을 세목 조정³²⁾하였는데, 세목조정 실시 일자는 2024년 1월 10일임.

< 2024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세부사업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예산조정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10.)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일반수용비 (210-01)	6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일반용역비 (210-14)	국민 대상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위한 용역비 추가 확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같이 회계연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다른 비목의 예산을 조정하여 당초 예산 편성 과정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32) 권익위는 해당 세목조정의 명목이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나,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기존 운영 사업인 바(2023년 예산 50백만원, 집행 46백만원), 실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초등학생 청렴캠프’ 용역을 신규 추진하기 위한 것임.

새로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하지 않은 집행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권익위가 신규로 추진한 초등학생 청림캠프의 내용을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약 20~3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2박 3일 간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초등학생 청림캠프’ 용역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사업명	· 2024년 초등학생 청림캠프 운영
교육기간	· 6. 13.(목) ~ 6. 15.(토) / 10. 17.(목) ~ 10. 19.(토)
교육장소	· 정약용, 맹사성 등 청림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 우산각공원(류관 유적지), 다산기념관, 율곡기념관, 맹사성기념관, 월봉서원, 명량대첩해전사기념관, 다산박물관, 사의재 등
교육인원	· 초등학생 5·6학년 53명(선발인원 : 60명) * 감기 등 개인사정으로 교육 당일 취소자 7명 발생
교육내용	· 청림한 위인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다양한 청림 체험활동을 통해 청림 6덕목 함양 * 청림일기 작성, 청림쇼츠 만들기, 청림골든벨, 청림박스 만들기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오히려, 본 내역사업의 다른 세부 편성내역인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림교육 위탁 운영(집행액 1억원)’을 통해 매년 약 85개교, 1

만여명³³⁾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4,400만원을 집행하여 불과 50여명의 학생에 대한 캠프 운영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해당 용역사업의 결과보고서에서도 “학생 안전과 장거리 이동 일정(2박 3일) 등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 참여인원이 소수여서 청렴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자체평가가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2025년에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일정, 횟수 및 참여 인원 등을 조정³⁴⁾하였다는 설명임.

□ 권익위는 당초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필요성 및 사업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신규 용역사업을 연도 내에 추진하는 집행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3) 2024년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기준

34) (’24년) 2회(2박 3일)·회당 30명(총 60명) → (’25년) 3회(1박 2일)·회당 50명(총 150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1)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정무직 전용 차량 임차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 준칙)에 반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매달 지급할 임차료 관련 계약을 전년도에 체결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여 차량 임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향후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대상물을 납품받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9일	조치완료
(2) 정보화 사업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 [지적사항]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정보화예산임에도 동 세부사업 내 공공요금 예산 300만원을 정보화 이외 사업(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_1136-366)으로 자체 전용하여 국내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이는 정보화 예산의 자체·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산 집행지침에 반하는 것임	○ 해당 예산지침을 준수해 정보화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자체전용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였음 ○ 앞으로도 예산 집행지침을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6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정보화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집행지침에 반하여 자체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정부통합 콜센터 인지도 개선 노력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정부통합콜센터는 통합연계되는 국가기관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콜센터 대표번호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정부통합콜센터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거 국정감사나 결산심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2014년·2016년 국정감사, 2017년 결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정부통합콜센터(110) 인지도 조사 결과 <table><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인지도 (%)</td><td>39.1</td><td>44.3</td><td>38.6</td><td>39.0</td><td>45.2</td></tr></tabl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지도 (%)	39.1	44.3	38.6	39.0	45.2	○ 인지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SNS, 포털 사이트, 동영상 플랫폼, 버스·지하철 등)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음 ※ SNS 홍보 이벤트, 영상 광고 총 6회, 버스·지하철 광고 총 4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지도 (%)	39.1	44.3	38.6	39.0	45.2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콜센터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4) 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사업 예산 50% 삭감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확대가 필요 함에도, 2023년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5,000만원을 격오지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차량 지원 등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조정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 예산의 50%를 삭감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 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 였음 ※ '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예산 이·전용 미실시 ※ 설치기관 : '22년 70개 → '23년 80개 → '24년 11월 94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5)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부실한 사업 수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사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은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치는 등 사업 성과물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워크숍 실시에 대한 내용 외에 당초 사업 목적인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프로	○ 2024년도 청렴컨설팅 심층 진단·분 석 진행 시 5개 기관 대상 내부 직 원에 대한 직급별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외부 이해 관계자 대상 집단·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향후 집행 시 사업 목적에 맞는 전 문 프로그램의 설계 등을 통해 사 업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 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그럼 설계,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임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교육·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변화 노력 필요	○ [지적사항] 청렴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문적 강의내용이 아님에도 특정 프로그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10회 이상의 강사료를 동일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2023년의 경우 17건, 2022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건, 13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에 가장 많은 횟수(21회)의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진 강사(판소리 전문가)의 경우, 동일인에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도합 1억 1,241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 '24년 하반기 교육 과정 운영 시 다양한 강사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강사 출강 현황 등을 관리하여 특정 강사 및 프로그램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동일 강사가 10회 이상 강의를 한 건수: ('23) 17건 → ('24) 7건 ○ 향후에도 신규 강의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교육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특정 강사 및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신규 강의개발 및 교육내용·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		
(7) 구조금 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 [지적사항]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중 “부패신고자 구조금” 내역사업은 부패신고자 지원을 통해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편성 예산 2,0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94일로,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금 지급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구조금 제도를 포함한 신고자 보 호제도에 대하여 포스터·리플릿· 카드 뉴스·광고 영상 제작, 온라인 캠페인 진행 등 다각도로 홍보함 ※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자체 민원실 등 포스터·리플릿 부착·배치(6 월), 권익위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 지 카드 뉴스 게시(8월), KBS·연합뉴스 등 TV뉴스 62회 송출 및 KTX 열차내부, 서울 지하철 역사에 옥외광고 홍보(12 월) ○ 기존 법령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구조금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연장 가능일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2024. 3. 5.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구조금 사건의 최대 처리기한을 180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4년 기준 평균 처 리기한 90일을 준수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8) 사업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전용 발생 주의 필요	○ [지적사항]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엄밀한 사업계획 및 정확한 예측 없이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연말 동 사업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불필요한 추가 전용이 발생하게 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월별 집행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의 집행 소요를 정밀하게 관리한 결과 '24년에는 불필요한 전용 발생하지 않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9) 집행실적 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 [지적사항] 최근 4년간(2020-2023)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 일부를 타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집행률이 최대 80% 미만 수준에 그침 - 이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실적의 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 매년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임 - 최근 4년간(2020-2023) 청탁금지제도 관련 신고 처리건수는 2020년 273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142건 (△52.0%)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 청탁금지법 관련 실적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감액한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앞으로도 청탁금지제도운영 예산 편성 시 청탁금지법 실적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집행액도 2020년 3억 800만원에서 2023년 1억 7,8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42.2%) 감소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실적 감소 추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10) 국내여비 적정 집행 및 전용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행정심판 운영”의 내역 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은 국내여비로 4,200만원이 편성됨. 그러나 편성예산의 50%에 달하는 2,200만원을 전용하여 6,6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예산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고,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사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요불급한 국내여비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국내여비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5년 국내여비를 6백만원 증액 반영하였음 ※ 행정심판운영지원 국내여비 ('24) 42백만원 → ('25) 48백만원 - 향후 국내여비 집행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11) 이행 강제금 부과 시 관계법령 신중 검토 필요 등	○ [지적사항] 이행강제금 과오납금 반환금 발생은 구법에 규정된 원인 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 하였다가 법적 근거 부재가 문제 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로 패소한 데 기인함 ※ 2023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border="1"> <tr> <th colspan="7">2023년도</th> <th rowspan="3">2024년도 예산액</th> </tr> <tr> <th colspan="2">예산액</th> <th rowspan="2">정수 결정액 (B)</th> <th rowspan="2">수납액 (C)</th> <th rowspan="2">불납 결손액</th> <th rowspan="2">미수 납액</th> <th rowspan="2">수납률 (C/B)</th> </tr> <tr> <th>본 예산</th> <th>추경 (A)</th> </tr> <tr> <td>110</td> <td>110</td> <td>128</td> <td>△62</td> <td>-</td> <td>190</td> <td>△48.4</td> <td>160</td> </tr> </table> ○ [지적사항] 수입과목 수납액을 초과 하여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은 어느 과목에서 반납되었는지 특정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재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한국은행 국고업무해설」 등에 따라 총 수입금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과목 에서 지출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시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 및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입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 예산	추경 (A)	110	110	128	△62	-	190	△48.4	160	○ 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폭넓 게 법령을 해석하여 적용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위원회 결정 시 신고자 보호 와 법령의 원칙적 해석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과오납금반환금 발생 시 당해 수납한 과태료 수입액의 범 위 내에서 반환금을 처리하겠으며, 당해 수입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반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련 부서와 협의 후 세출예산을 마 련하여 집행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 예산	추경 (A)																											
110	110	128	△62	-	190	△48.4	160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 납금반환금을 세출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부패 신고자 보상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부패신고자보호보상”은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 되어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는 최근 4개년(2020~2023년) 중 최대 규모인 14억 4,2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이는 부패신고자 대상 보상금이 매년 과소추계되었기 때문임 ※ 최근 4년간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본예산(A)</td><td>3,233</td><td>2,582</td><td>2,682</td><td>2,832</td></tr><tr><td>실집행액(B)</td><td>3,878</td><td>3,540</td><td>2,999</td><td>4,274</td></tr><tr><td>부족분(B-A)</td><td>645</td><td>958</td><td>317</td><td>1,442</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사업에 적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도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A)	3,233	2,582	2,682	2,832	실집행액(B)	3,878	3,540	2,999	4,274	부족분(B-A)	645	958	317	1,442	○ 보·포상금 신청 및 지급 결정 내용, 최근 3~5년간 보·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추이, 평균 집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예산 편성 시 부패신고자 포상금(310-03)은 전년에 비해 560백만원 증액하고, 공익신고자 포상금(310-03)은 432백만원 감액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 - 다만, 보·포상금 사업은 다음해 보상금 신청사건 수, 고액 보상금 신청 건수, 보상금 환수 완료 시기 등 여러 변수들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연도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A)	3,233	2,582	2,682	2,832																			
실집행액(B)	3,878	3,540	2,999	4,274																			
부족분(B-A)	645	958	317	1,442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13)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발생 방지 필요 등	○ [지적사항] “청렴권익민간협력” 중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내역 사업의 근거인 훈령이 2023년 2월 까지 유효함에도, 해당 훈령의 유효 기간 개정을 전제로 2023년 전체 기간(12개월)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여 대부분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예산 일부(900만원)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훈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되었고, 청렴사회민관 협의회 운영이 중단되면서 당초 계상하였던 예산 1억 8,600만원 중 1억 5,200 만원(81.4%)이 불용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시정)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과다 편성된 예산을 타 용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향후 법령의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의 경우 편성에 필요한 사전 의사결정 및 준비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또한, 과다 편성된 예산을 타 용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4) 보상금 지급을 위한	○ [지적사항] 신고 유형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인건비 전용과 내역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잉여재원의	○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매년 내역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5년 예산 편성 시 부패·공익·공공재정 부정수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반복적인 인건비 전용 및 내역변경 지양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4년간 신고자 보상금등 전용·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부패신고자보호보상</td><td>646</td><td>959</td><td>320</td><td>1,447</td></tr><tr><td>공익신고제도 운영</td><td>△506</td><td>△996</td><td>722</td><td>△931</td></tr><tr><td>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기관합계제도 운영</td><td>△115</td><td>37</td><td>-</td><td>△41</td></tr><tr><td>청탁금지제도 운영</td><td>△25</td><td>△40</td><td>△3</td><td>△38</td></tr><tr><td>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td><td></td><td></td><td>△5</td><td>△6</td></tr></table>	구분	2020	2021	2022	2023	부패신고자보호보상	646	959	320	1,447	공익신고제도 운영	△506	△996	722	△931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기관합계제도 운영	△115	37	-	△41	청탁금지제도 운영	△25	△40	△3	△38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5	△6	급·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신고 관련 포상금 비목(310-03)을 일원화하여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함 -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보·포상금 신청 및 지급 결정 내용, 최근 3~5년간 보·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추이, 평균 집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부패신고자보호보상	646	959	320	1,447																													
공익신고제도 운영	△506	△996	722	△931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기관합계제도 운영	△115	37	-	△41																													
청탁금지제도 운영	△25	△40	△3	△38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5	△6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 전용을 통해 보상금 등의 부족분을 조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 유형별 지급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내역변경을 최소화 할 것																																	

